

- 민주화 이후에도 과거 의문사와 관련된 인사가 공직에 있고, 제도와 법이 잔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 의문사 가해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나 기관들이 민주화 이후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에게 의문사 진상규명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통한 정의실현이라는 근본 취지에 맞게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를 은폐한 채 처리해야 할 사건에 불과한 것이다.
- 비록 정권이 군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의 핵심관련자들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진상규명을 어렵게 한다. 많은 경우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의 이행이 위로부터의 탐욕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행과정에서 군부는 향후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정치영역에서 퇴각했다. 여전히 군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거 군사정부 관련자들은 쿠데타 위협 등을 통해 민간정부 하에서의 과거청산을 원천봉쇄하거나 방해했다.
-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권한과 활동영역의 제한이다. 민주화 이행 이후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 위법한 공권력으로 인한 의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조사 자체로 제한되고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 한이 과거 인권탄압과 관련된 기관에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어려웠다.
- 의문사 문제의 진상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국민적 합의의 어려움이다. 의문사 관련 유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은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군부의 과거청산 반대움직임 속에서 국민적 화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문사 문제 해결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 (2) 경제적 보상

□ 국가권력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희생당한 이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과거에 침해되기 이전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금전적 보상, 공공 서비스의 제공, 빼앗긴 재산의 반환 등이 경제적 보상에 속한다.

### (3) 명예회복

□ 군사정부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항하다 희생당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보상의 중요한 부문이다. 이는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와 가해자들의 사과임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자국민 권리수호 책임에 대한 공인이다.

### (4) 추모사업

□ 독재정권에 대항한 희생자들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사업을 통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도 중요한 보상이다. 추모사업은 희생자들의 정신계승뿐만 아니라 향후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3) 사면(법)의 의미

□ 군사정부는 퇴임직전에 사면법을 제정하여 군사정부 재임기간 동안의 의문사를 비롯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사면시켰다.

□ 사면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희생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사면법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통한 생명권을 침해한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실현

차원에서의 차별을 부정하는 것이다.

#### 4) 과거청산의 국가별 공통점과 차이점

□ 군사정부 하에서의 국가권력에 의한 가혹한 인권탄압과 그 과정에서의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의문사 사건을 경험한 국가들에서의 민주화 이행 이후 과거청산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 (1) 과거청산의 국가별 공통점

□ 먼저 대부분 국가에서 보이는 의문사 사건 처리를 둘러싼 공통점을 보자.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군사정부 하에서 발생되었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처리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리고 국민적 열망 속에서 출범한 민간정부는 군사정부 하에서 국가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발생된 의문사를 처리하는데 일정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의지에 기초해 많은 국가에서 '진상규명' '국민적 화해'를 추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또한 의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들 위원회의 활동에 진상규명과 정의실현 차원에서 적극 호응했다.

##### (2) 과거청산의 국가별 차이점

□ 다음은 국가들간의 차이점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군사정부의 인권탄압을 경험한 국가들에서 민간민주정부 하에서 과거청산에 나섰지만,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진상규명과 정의실현 정도,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 구체적 활동과 사업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용서하려 한다거나, 용서하는 자의 권리가 용서받는 자의

권력보다 강력하지 못한다면, 법적 사면은 정치적 타협으로 전락하여 불처벌의 끝인을 위한 거래에 소용될 수밖에 없다.

□ 민주화에 기여하는 법적 사면은 ① 용서의 정당한 주체가 용서받는 자보다 강력한 권력을 보유한 가운데 ② 그 내면의 응징하려는 권력을 물리치고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제공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민세력의 힘이 압도적이고 법적 사면을 위한 자산이 충분한 경우에도 민주화에 기여하는 법적 사면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당사자들의 속죄'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당한 법적 평가가 있을 수 없으며, 당사자들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응징 대신 용서를 택할 명분이 마련될 수 없다.

### (3) 국가간 차이점을 유발하는 요인들

□ 민주화 과정의 성격이다.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기존 군사정부와의 단절성의 정도는 이후 민간민주정부 하에서 추진하는 과거청산 작업을 다르게 한다. 아르헨티나의 사례처럼 경제위기와 전쟁패배 등으로 인한 군부의 급격한 후퇴로 과거체제와의 단절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화로 이행된 국가에서는 민간정부 하에서 군사정부 하에서 자행되었던 과거청산에 대한 작업이 상대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되었다. 칠레의 경우처럼 군부와 민주세력간의 타협을 통해 민주화 이행이 진행되었던 국가에서는 민간정부에 의한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의 부도덕한 국가권력 사용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정의실현 작업이 군부의 견제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기가 어려웠다.

□ 민간정부 하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자의 과거청산을 위한 의욕이다. 선거운동 과정부터 군부의 과거사 청산을 강하게 주장했던 아르헨티나의 알퐁신 (Raúl Alfonsín)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에 집권한 직후 인권탄압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면서 군사정부 하에서의 사면법을 무효화시키고 군사평의회 주요 멤

버를 비롯한 장군들을 의문사를 비롯한 인권탄압 혐의로 처벌했다. 반대로 칠레의 아월린은 진상조사에 중점을 두어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군사정부 시기 인권탄압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사면법을 존중하면서 의문사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역사적 심판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 민간정부의 과거청산 작업을 강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능력과 과거 의문사 사건 처리에 대한 태도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군사정부 시기 인권운동에서는 분열상을 보이고 지역적 차원의 운동으로 국한되었었는데, 민간정부의 적극적 과거청산 의지와 결부되어 민주화 이후에는 '국가위원회' 작업에 그동안 자체적으로 조사해왔던 자료를 제공하여 협력했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에 칠레의 경우 군사정부 하에서 높은 통일성과 전국적 차원의 인권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단체와의 긴밀한 연계 때문인지 민주화 이행 이후에는 군부정권의 과거사 처리를 진상규명 차원으로 국한시키는 등 소극적으로 대항했다.

## 2. 아르헨티나의 사례

### 1) 군사정부 하에서의 인권침해 정도

- 1976년 3월 24일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억압적인 군사정부가 쿠데타로 집권했다. 특히 비델라(Jorge Rafael Videla) 정부 하에서 대 게릴라 전쟁이라는 명분하에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이른바 ‘더러운 전쟁’(dirty war)이 자행되었다. 비델라는 자신들의 목적이 단지 폐론주의 시대의 혼돈을 종식시키고, 아르헨티나 사회를 재건하는 데 있다고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납치, 체포, 구속, 고문, 처형, 실종으로 많은 국민들 희생되었다. 또한 군사정부의 억압통치 하에서 일반적으로 명백하고 논쟁적이었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침묵과 협박의 불명예를 경험했다.
- ‘전쟁’의 대상으로 상정되었던 게릴라 조직들의 활동이 1980년대 초 거의 소멸되었음에도 아르헨티나 군부는 권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적’의 개념을 확대시켜 대 국민 전쟁을 지속시키려 했다. 군부의 조직적 증거인멸, 진상규명의 미흡으로, 그리고 조사기관별로 9천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군사정부하의 의문사 희생자들의 수는 정확히 산출되지 않고 있다.

### 2) 정부의 인권침해 가해자 사면

- 군사정부는 퇴진 직전인 1983년 4월 28일 ‘군사평의회최종보고서’ 공포하여 군에 의한 인권탄압의 시발점이 이사벨 페론(Isabel Peron) 민간정부의 요청이었다고 강변했다.
- 1983년 9월 22일 비그노네(Reynaldo Bignone) 과도정부는 법률 제 22,924호 ‘국민화해법’이라는 자기사면법 제정했다. 이 법에서는 1973년 5월 25일부터 1982년 6월

17일 사이의 군대에 의한 인권침해를 소위 '국가전복기도에 대한 전쟁'에 발생된 부득이한 조치로 합리화했다. 이 법에 의해 이 기간동안 발생된 모든 정치 범죄에 대해 포괄적 사면조치를 단행된 것이다. 이는 군부가 말비나스(포클랜드) 전쟁 패배로 급격히 권력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 1986년 인권침해에 대한 법정 절차 종료시점을 60일로 제한시켰다. 그러자 법 절차 종료 마감일 이전에 피해자들의 고소가 폭주했다. 처벌에 직면했던 군부는 연속적인 쿠데타 위협으로 맞섰다.
- 1987년 '명령복종법'은 군부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인권탄압 가해자라 하더라도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의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시킨다는 것이었다.
- 1987년 알퐁신 대통령은 리코(Aldo Rico) 중령의 쿠데타 해결 1주일 후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령이하 장교들에 대한 전면적 사면조치를 취했다. 알퐁신 대통령의 '사면조치'는 이미 고소된 인권침해 사범들에 대한 소송중단을 천명하는 것이었다.
- 1989년 대통령에 취임한 메넴(Carlos Saul Menem)은 사면론자를 국방장관에, 군부강경파를 참모총장에 임명하여 군사정부 시절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을 중단시켰다.
- 1989년 10월 60명이 게릴라 사면과 인권침해 혐의로 기소된 군인과 경찰피의자 대부분 사면되었다.
- 1990년 12월 메넴의 '추악한 과거를 잊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민대화합 조치라

는 명분하에 군부정부 시절 인권탄압 가해혐의로 알퐁신 재임기에 처벌되었던 많은 군부 관리들을 사면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을 역임한 군정 최고위층 5명과 미국으로부터 신병인도 되어 38건의 살인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장군 1명을 몬테네로 게릴라 지도자 1명과 동반 사면시켰다.

□ 정부에 의한 군사정부 하에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사면조치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사실을 규명하는 정부의 처사를 망각하는 것이다.

### 3) 보상의 의미

□ 많은 인권단체들은 국가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인권단체들과 의문사 유가족들 내부에서 보상의 의미를 두고 분열양상을 보였지만 일반적 주장은 보상이 군사정부 하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과 정의실현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을 침해한 국가는 인권회복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인권침해 희생자들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실종자들에 대한 국가위원회'(CONADEP)는 국가가 의문사 희생자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학비와 사회보험과 고용 등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피해자들의 실종으로 발생된 다양한 가족적 사회적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인정하기 위해 적합한 법률들이 통과되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 4) 보상정책의 집행내용

□ 보상에는 희생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통한 정의실현, 인권침해로 인해 발생된 손실분에 대한 경제적 보상(compensation), 추모사업을 통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이 포함된다.

### (1) 진상규명 차원의 보상

- 7천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되는 실종자의 대부분이 살해되었다고 추정되는 가운데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는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치유될 수 없다. 따라서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 실종자들의 희생과 관련되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보상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인권조직들과 활동가들은 희생자들이 어떻게 살해되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생존자와 가족, 일부 양심고백한 인권침해 가해자들부터 정보를 수집, 취합,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부도덕한 군부가 그 당시 무슨 일을 자행했는지를 규명해야 했다.
- 이처럼 인권단체들과 희생자 가족들이 의문사를 비롯한 인권탄압 사건에 대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집해 왔던 것과 대조적으로 국가는 실종자 가족과 사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되는 궁극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기했다. 오히려 국가는 인권탄압과 관련된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은폐시키고 폐기하기까지 했다.
- 198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사면법, 인권탄압, 폐전, 부정부패와 같은 과거청산이 중요 의제로 되었다. 폐론당 중심의 선거연합전선인 정의당(Partido Justicialista)의 대통령 후보인 변호사 출신인 이탈로 루더(Italo Luder)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사면법의 폐지에 반대했다. 반면에 급진시민연합(Union Civica Radical)의 알퐁신 후보는 폐론당의 입장을 군부와 밀약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동 법의 폐지와 인권범죄자의 처벌을 선거공약으로 강조했다. 그 선거에서 알퐁신이 51.8%의 지지로 40.2%를 획득한 루더 후보에 승리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83년

12월 10일 취임했다.

□ 알퐁신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군사평의회(junta) 장군들에 대한 기소를 명령했다. 또한 실종자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하에 CONADEP가 창설되었다. CONADEP는 모든 국가기관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필요한 경우 경찰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CONADEP 실종자 조사에 인권단체들과 희생자 가족들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들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했다.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인권조직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CONADEP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의 실종자들에 대한 1년 동안의 조사활동을 정리한 ‘절대 다시는 안 된다’는 뜻을 지닌 ‘Nunca Más’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실종자들에 대한 방대하면서도 상세한 조사, 기록으로 공적 권위를 획득하였다.<sup>1)</sup>

□ 그러나 CONADEP의 활동은 대통령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일 뿐, 인권범죄자의 기소와 처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진상규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가족들과 인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 진상규명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극히 일부분에 그쳤다.

## (2) 정의실현(처벌)

□ 진상규명은 위법한 국가권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의 첫 번째 조치이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이 어떻게 희생되었는가에 대해 조사된 진상을 통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한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라는 정의실현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통한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1) CONADEP(1984), Nunca Más,

<http://www.desaparecidos.org/arg/conadep/nuncamas/indice.html>

희생자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필수적이다.

- 정의실현은 가해자 개인에 대한 사회적 보복차원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향후 인권침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아르헨티나 인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과거 만행을 폭로해왔고, 그들을 기소해왔다.
- CONADEP의 실종자 조사에 대한 Nunca Más 보고서를 통해 과거 군사정부하의 조직적 인권탄압의 실상이 드러나자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요구가 높아졌다.
- 이에 알퐁신 정부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과거의 위헌적 법률들의 폐지와 고문에 대한 처벌의 상향조정, 군사법원의 관할권 축소를 제안하는 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의회는 과거의 위헌적 법률들을 무효화시키는 결의를 채택하여 소급입법문제 등 이 법률들 적용을 둘러싼 위헌논의를 무력화시켰다.
- 이 과정에서 1984년 초 비델라(Jorge Videla), 로베르토 비올라(Roberto Viola), 레오폴도 갈티에리(Lepoldo Galtieri) 등 군사정부 실권자 9명이 불법감금과 납치, 고문 등 인권유린 혐의로 군사재판에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CONADEP 보고서를 통한 공식적인 증거에도 불과하고 1984년 9월 재판을 담당한 군 최고회의는 이들 피의자들에 대해 과거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해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9명 모두를 무죄 판정했다. 군사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군사법정의 무죄판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고조되었다.
- 이에 알퐁신 대통령은 연방법원에 군사정부 지도자들의 인권탄압에 대한 책임문제를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군사 정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군사재판에서 연방항소심으로 이관되었다. 연방법원은 공개재판을 통해 9명의 군사정부 지

도자들을 과거 인권탄압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하고 처벌했다. 1985년 12월 연방법원은 5명에 종신형에서 4-5년까지 실형을 선고하는 등 유죄판결을 내렸다. 반면에 4명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 특히 테러리스트 집단의 분쇄라는 미명하에 군정 반대세력에 대한 살인과 고문 행위로 9천명에서 2만 5천명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를 낳은 이른바 '더러운 전쟁'의 책임자인 비델라 전 대통령에게는 살인혐의가 추가되었다. 비델라 전 대통령과 마세라 전 해군참모총장에게는 무기징역, 비올라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되었다. 비밀경찰로 납치, 고문에 깊숙이 개입한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간부 30여명에게도 4년에서 25년의 형이 선고되는 등 3백 70여명의 군정 관계자들이 처벌되었다.

□ 군부 수뇌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로 인해 2천명이 넘는 하위직 장교들이 기소와 처벌을 당할 처지가 되었다. 알퐁신 대통령은 1986년 6월 하급장교 300명을 인권유린 혐의로 기소하려 했다. 이에 불만과 위협을 느낀 군부는 쿠데타로 알퐁신 정부를 협박했다.

□ 점증하는 군부로부터의 쿠데타 위협에 직면한 알퐁신 정부는 민주체제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기소최종증지'((Punto Final)법을 제정하여 인권범죄에 대한 기소에 60일의 법적 시한을 두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인권단체와 사법부의 활약으로 예상을 초과하는 수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기소되고, 1987년 4월 알도 리코 중령 주도로 부활절을 기해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하자 알퐁신 정부는 인권재판을 매듭지으려고 했다.

□ 알퐁신은 TV에 나와 연방대법원이 '정당한 복종'의 면책조항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기 바란다고 공표하기 했다. 이러한 알퐁신 대통령의 인권침해 사범들에 대한 면책언급은 '복종의무'(Obediencia Debida) 사면법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법에 의해 상부명령 또는 지시에 따른 준장 이하 장교들에 대해 인권유린 혐의는 기소대상

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당초에 중령 이하 장교들에만 해당되었지만, 군부의 반대로 알퐁신 정부는 준장 이하로 수정했다. 이 법에 의해 인권유린 혐의로 기소된 장교 수는 234명에서 50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 이러한 알퐁신 정부 후반기의 사면조치는 일부 장교들이 주도한 군사반란에 대한 알퐁신 정부의 대 군부 타협책이었다. 경제안정화 정책의 미흡한 성과 때문에 정치적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의 4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쿠데타 위협은 알퐁신 정부에 커다란 압력이 되었던 것이다.<sup>2)</sup>

□ 1987년 4월 리코(Aldo Rico) 중령 등이 ‘캄포 데 마요’(Campo de Mayo) 연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주변부대는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이들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란군은 당시 군 참모총장 에레뉴(Ríos Erenu)의 사임과 인권재판의 즉각적 중지를 요구했다.

#### - 정의실현의 어려움

□ 앞에서 보았듯이 CONADEP의 광범위한 조사활동 결과 군사정부 시기 의문사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수 있었다. 그러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포함한 정의실현 차원은 군부의 쿠데타 위협, 대통령의 의지 미약(특히 메넴 대통령) 등으로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 알퐁신 민간정부 초기 정의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1983년에 제정된 사면법으로 이 법에 의해 군사정부가 퇴임직전에 자신들의 재임기간 동안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사면조치를 취한 것이다.

2) 이국운, 아르헨티나 인권재판의 전개과정, 법과사회 제12호, 1995.

- 또 다른 법적 문제는 군형법상의 관할규정으로 당시 군 형법에 의하면 군인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오직 군사법원만이 지니고 있었다. 문제는 군사법원이 군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대표적 사례가 1984년 초 비델라, 로베르토 비올라, 레오폴도 갈티에리 등 군사정부 실권자 9명의 재판에서 군사법원이 9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는 직간접적인 증거들에 의해 2천명이 넘는 하위직장교들이 기소와 처벌을 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군부의 위기감은 4차례의 군사쿠데타 시도로 나타났다. 알퐁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정에서 사면법을 고려했다.
- 1986년 계류중인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정당한 복종'의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기소하라는 국방부장관의 훈령으로 시행되던 사면조치는 기소에 법적 시한을 두는 '기소최종증지법'을 제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 알퐁신 대통령에 의해 민주체제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안된 이 법률의 핵심 내용은 인권범죄에 대한 기소에 60일의 법적 시한을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인권단체와 사법부의 활약으로 예상을 초과하는 수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기소되고, 1987년 부활절을 기해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하자 인권재판을 매듭지으려는 알퐁신 정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되었다. 알퐁신은 TV에 나와 연방대법원이 '정당한 복종'의 면책조항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기 바란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 결국 기존의 면책조항을 개정한 '직무준수법'이 입법되었다. 이의 핵심내용은 이미 법률 제 23,049호에 규정되어 있던 '정당한 복종'의 면책조항을 '추정'규정에서 '간주'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었다.
- 사면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활발한 시기에 집권한 메넴정부는 인권침해 가해자들

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메넴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모든 인권범죄자들을 사면하고자 하였다.

### (3) 경제적 보상(financial reparation)

- 아르헨티나 정부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에 사면조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생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진행시켰다.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진상규명, 정의실현, 명예회복 등을 포함한 보상의 일부분이다.
-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조치 중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된 것이 경제적 보상이었다. 이는 부당한 권력에 의해 발생된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희생자들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 보상과 관련된 법안들에서 인권침해의 희생자의 범주를 직접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는 희생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경제적 보상 수혜는 희생자의 유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망자 가족이나 실종자 가족들은 그들의 가족을 잃어 겪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 국가의 인권침해 잘못 인정 유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인권침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국가는 인권침해와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경제적 보상에서 의문사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정치범으로 수감되었던 사람들도

그들이 감옥 또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시간들과 비례하게 경제적 보상을 받았다.

#### □ 경제적 보상을 위한 법 제정

- 법률 제23,466호(1987년) 실종자 자녀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금은 21살까지 실종자 자녀들은 매달 연금 140 폐소를 받게 되었다.
- 법률 제24.043호(1991년 11월) : 이 법은 이사벨 페론(Isabel Peron) 정부가 군부 쿠데타에 의해 붕괴된 시점인 1974년 11월 6일에서 민주정부가 취임한 1983년 12월 10일 사이에 군사법정 또는 행정력에 의해 수감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었다. 약 7천명 정도가 이 법에 의해 보상금을 제공받았다. 이 법에서는 감옥 수감 1일당 75달러 정도 제공을 규정했지만 실질적 보상은 그보다 크게 낮았다.
- 법률 제24.043호(1991년 12월 23일) : 메넴 대통령은 1976-83년 동안 정치적 이유로 구속되었던 사람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았으면서도 기존의 법에 의해 보상을 제공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 되었다. 특히 보상은 구금일수에 맞게 매우 높은 조건으로 책정되었다. 구속동안의 사망에 대해 금전적 보상은 구금일수에 대한 보상과 5년 추가 분의 총합을 지불했다. 법은 내무부의 인권국(the human rights office)에 의해 시행되었다. 고소는 법의 공포일 180일 이내에 해야했다. 그리고 원고는 어떠한 다른 보상권을 포기해야만 했다.<sup>3)</sup>

이 법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인사들에 대한 보상을 목표로 한 반면 실제 적용에서 여러 제한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수혜를 어렵게 했다. 첫째 이유는 희생자들이 행정부에서 발행된 서류를 토대로 구속기간을 증명해야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군사정부

3) Edelstein, Jayni(1994), Rights, Reparations and Reconciliation: Some comparative notes, Seminar No. 6. <http://www.wits.ac.za/csvr/papers/papedel.htm>

는 유괴를 인정하지 않았고 신생 민간정부들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 둘째는 많은 희생자들과 가족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수령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국가에 의한 재정적 보상 수령은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을 돈으로 교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sup>4)</sup>

- 법률 제24.321호(1994년) : 그중 하나로 이 법에서는 군사정부 하에서 1983년 12월 10일까지 억압세력들에 의해 실종된 사람들을 “강요된 실종에 의한 부재”(Absent by Forced Disappearance)란 사법적 규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법은 실종자들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구와 결혼했고, 어떻게 죽었는지 등 실종자들에 대한 국가기록원(National Registry)의 상세한 기록을 규정했다. 또한 이 법은 실종자의 부인들이 재혼하더라도 그들 자식들의 독점적인 법적 보호권을 가지고, 실종자의 재산 양도를 허락했다.

- 법률 제24.411(1994) : 이 법은 군사정부 하에서 억압적인 공권력에 의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규정했다. 이 법은 또한 실종된 사람들만 조사해 왔던 CONADEP의 보고서 왼쪽 공란에 즉결처형된 이들의 등록을 허가했다. 이처럼 즉결처형된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기록은 그동안 CONADEP가 실종자에 대한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식보고서에서 즉결 처형된 이들의 명단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5)</sup>

법률 제24.411에서 규정한 금전적 보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 그 대상자는 CONADEP의 실종자 보고서에 등록된 실종자들의 가족 구성원 또는 정부의 인권사무국에 실종과 사망으로 보고된 이들의 가족이었다. 그 규모는 약 1만

4) Edelstein, Jayni(1994), Rights, Reparations and Reconciliation: Some comparative notes, Seminar No. 6. <http://www.wits.ac.za/csvr/papers/papedel.htm>

5) Lois, Graciela & Lacabe, Margarita, Search of Vindication Reparation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Argentina, <http://www.derechos.org/koaga/vii/lois.html>

5천여명의 사망과 실종자들의 가족이었다. 비록 위원회가 실종자를 8,960명으로 기록 했지만 많은 사례들이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총 비용은 약 20-30억 폐소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가채권으로 예상되는 보상금 30억 폐소를 지급하려 계획했다. 대상자에게 22만 폐소가 일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보상금 22만 폐소의 산 출기준은 가장 높은 임금의 수준에서 100달러에 준하는 것이었다.

- 법률 제23,466호 (1995년) : 이 법은 실종자들의 배우자, 부모, 형제들, 자녀들 등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일시적(provisional) 혜택으로 최소한의 연금을 제공하는 것을 규정했다. 자녀에 대한 연금제공은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실종된 21살 이하 사람들로 규정했다. 당시 아르헨티나 1개월 생활비용은 140 달러 정도였다. 1999년 의회는 “아동납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역사적 보상자금” 마련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근거해 ‘5월광장할머니회’는 실종 아이들을 찾기 위한 자금으로 2년 동안 2만 5천 달러를 받았다.

#### □ 정치범에 대한 보상

- 국가권력에 의해 살해된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군사정부 하에서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 구속자들 중에 일부는 비록 정치적이고 불공정하더라도 재판을 받아서 수감되었지만, 상당수는 사법적 재판 없이 행정처분에 의해 수감되었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이들 구속자 중 일부가 국가를 기소했지만 사법부는 이를 기각했다.
- 이에 희생자들은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아르헨티나 국가를 기소했다. 그러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1990년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원자들에 대한 보상제공을 규정한 법을 마련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자 알퐁신 대통령은 보상지급

을 허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약 260명이 이 조치에 따라 보상을 신청했다. 보상의 기준은 구속자들의 구속기간에 따라 정해졌다. 감옥에서 죽거나 고문피해자 등에게 가장 많은 보상이 제공되었다.<sup>6)</sup>

#### (4) 추모사업을 통한 명예회복

- 군사정부 하에서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항하다 희생당한 이들에 대한 추모사업은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의 공식적 인정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또한 인권침해 희생자들에 대한 공적 추모는 그들을 권리를 회복시켜 주고 군사정부 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회에 재인식하는 것이다.
- 이러한 추모사업은 집단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보상의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은 서로 다른 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작업도 잘 기록되지 않았다.
- 아르헨티나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많은 공적 추모는 실종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불명확성과 그들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끔찍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 여러 학교에서는 실종된 학생과 졸업생, 교수들을 추모한다. 학교는 추모행사에 그 유가족들을 초대하고 희생자들의 사진을 이름과 함께 게시했다. 1998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은 처음으로 그의 부모, 5월광장의 어머니들, 다른 인권관련 조직들의 인사들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실종된 학생에 졸업장을 수여했다.

6) Lois, Graciela & Lacabe, Margarita, Search of Vindication Reparation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Argentina, <http://www.derechos.org/koaga/vii/lois.html>

## □ 지역적 차원에서의 추모사업

- 일부 도시는 해당 도시 실종자들을 위한 추모관을 건립하고 그들에 보상해줄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프로젝트인 국가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은 아마 희생자들의 공적 기념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될 것이다. 실종과 사망자들의 이름이 그들이 버려진 강가에 쓰여졌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강가를 찾는 많은 이들에 의해 되뇌어 질 것이다. 트렌케 라우肯(Trenque Lauquen)의 경우 그 도시에서 실종된 7명을 추모하기 위해 시 광장에 야외조각공원을 조성했다. 리오 네그로(Rio Negro)의 비야 레히나(Villa Regina)시는 작가 누이 실종에 관한 책이 관심을 끌면서 “El Libro de Mariel”을 선언했다.<sup>7)</sup>

## □ 인권탄압과 관련된 건물 보존문제

- 군사정부 시기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학살의 집단적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보상의 다른 유형은 국가테러 장소로 이용되었던 곳을 건물과 시설을 보존하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미래 세대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났던 학살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군사정부 시절 아르헨티나 최대 규모의 집단 수용소였던 해군군사학교(ESMA; Escuela de Mecanica de la Armada)<sup>8)</sup> 수용소를 군사 정부의 탄압의 상징으로 보존하려고 했다.

- 이러한 인권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998년 메넴정부는 해군의 군사학교를 옮기고 이 지역을 녹색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 ESMA 건물을 파괴시키려 했다. 메넴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인권단체와 의문사 유가족들은 ESMA 건물은 희생자들의

7) Lois, Graciela & Lacabe, Margarita, Search of Vindication Reparation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Argentina, <http://www.derechos.org/koaga/vii/lois.html>

8) 수천명의 사람들이 해군(Navy)에 의해 납치된 이후 이곳에 있었고, 이들에 대해 가혹한 고문과 살해가 자행되었다.

정신과 학살자들의 범죄행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이 빌딩 파괴는 과거에 대한 살아 있는 증거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더불어 인권단체들은 ESMA 이외에도 군사정부 시절 민주인사들의 수용소였던 건물들을 추모관으로 보존하여 군사정부 하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9)

#### □ 기념공원, 기념비 건립

- 아르헨티나 정부는 1999년 3월 24일 군사정부 시절 국가테러로 인한 희생자를 위해 많은 실종자들이 살해되어 그 시신이 버려진 플라타강(Rio de la Plata) 주변에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겨 넣은 기념비(monument)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는 물론 인권단체들과 의문사 유가족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 이처럼 기념공원과 기념비 건립은 또 다른 차원의 보상이다. 이러한 기념사업은 진실과 정의를 모색함과 동시에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지닌다. 기념공원과 기념비 건립을 통해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하다 희생된 이들의 정신을 기립과 동시에 향후 아르헨티나에서 다시는 부도덕한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 또한 기념사업은 국가의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공개적 유죄판결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

#### □ 의문사 희생자 자녀들의 군대복무 면제

9) Lois, Graciela & Lacabe, Margarita, Search of Vindication Reparation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Argentina, <http://www.derechos.org/koaga/vii/lois.html>  
10) Lois, Graciela & Lacabe, Margarita, Search of Vindication Reparation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Argentina, <http://www.derechos.org/koaga/vii/lois.html>

- 1990년 9월 27일 의회를 통과하고 1991년 1월 2일 반포된 법률에 의거해 의문사 희생자들의 자녀들이 군대복무 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 이 조치는 국가의 인권침해로 인해 희생자 가족들이 겪은 고통의 일부라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취해진 것이었다.

#### □ 진상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유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의 노력

-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의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는 군사정부 시절 발생된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의실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들은 매년 3월 24일 국가권력에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3월 24일은 1976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이사벨 폐론 정부를 전복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날이다.

- 유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절차 종료시점을 60일로 제한시킨 1986년의 최종기소중지법과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에게 인권탄압의 법적 책임을 면제시킨다는 1987년의 명령복종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결국 1998년 3월 24일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했던 2개의 법안이 무효화되었다.

#### 5) 보상문제를 둘러싼 인권단체들의 갈등

□ 아르헨티나 인권단체들은 보상의 의미와 범위문제를 둘러싸고 이견과 갈등양상을 보였다. 보상문제는 인권단체를 내부를 심각하게 분열시켰다.

□ 1986년 아르헨티나 인권운동의 상징인 5월광장의 어머니들이 경제적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두 개의 분파로 분열되었다. 보상수용을 주장한 분파는 국가에 의한 희생자 유가족들에의 경제적 보상이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인정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인식했다. 반면에 보상거부를 주장한 다른 분파는 경제적 보상은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돈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인식한 분파는 금전적 보상의 수령을 강력히 거부하고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보상금을 받은 단체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리고 이 그룹은 경제적 보상을 진실과 정의의 위한 투쟁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돈과 맞바꾸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경제적 보상을 매각으로 보고, 국가의 인권침해 죄상을 면제 또는 약화시킨다고 보았다.

□ 경제적 보상에 반대했던 조직들은 보상의 유일한 방법은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국가는 인권 침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러한 심판이 없는 상황에서의 모든 형태의 보상을 거부했다. 또한 이 그룹은 국가가 군사정부 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연합은 모든 실종자들은 개별적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이들 조직들은 국가테러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 8개 인권단체가 국가의 경제적 보상을 수용한 반면에 에베 데 보나피니(Hebe de Bonafini)가 회장으로 있던 '5월광장어머니회'만 경제적 보상이 군사정부가 과거에 저지른 만행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경제적 보상 수용을 거부했다.<sup>11)</sup>

#### □ 피해 사례들

- 엘사 오에스터헬드(Elsa Oesterheld)의 경우 : 1976년 51세로 희극작가인 남편, 4명의 딸과 살고 있었던 그녀는 전형적인 군사정부에 의한 피해자였다. 그녀의 4딸은 모두 결혼하여 2명은 아이를 낳았고 2명은 당시 임신중이었다. 군사쿠데타 이후 몇 달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상실했다. 그녀의 남편은 체포되었고, 4명의 딸들과 두 명

11) Lois, Graciela & Lacabe, Margarita, Search of Vindication Reparation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Argentina, <http://www.derechos.org/koaga/vii/lois.html>

의 외손자들은 실종되었다. 이후 그녀는 아무런 보상없이 생존한 손자들을 교육시키며 어렵게 살았다.

- 에스텔라 카를로토(Estela Carloto)의 경우 : 1976년 임신 5개월된 딸 라우라(Laura)가 실종되었다. 그녀는 5월의 광장 할머니회 회장으로 10년전 “사랑스런 라우라의 값을 책정할 수 없다”면서 경제적 보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그녀는 생각을 바꾸어 국가의 경제적 보상이 어려움 속에서 성장한 실종자들의 아이들에게 경제적 보상이 그들의 교육과 행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보상은 정부에 의한 시혜조치가 아니라 국가가 훼손한 것들을 복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보상금이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수령해서 공공 서비스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에 기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국가에 의한 경제적 보상이 의문사 희생자들이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카를로토는 경제적 보상 수용과 더불어 증거인멸 혐의로 아르헨티나 정부를 고소했고 조직적 유아도둑 사건<sup>12)</sup>을 들어 군장교 5명을 고발하는 등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을 주도했다.<sup>13)</sup>

## 6) 아르헨티나 화합조치 평가

□ 아르헨티나는 인권침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보상이 행해지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에서 통과된 보상입법은 희생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야할 유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가들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그리고 인권단체들간의 갈등을 겪은 아르헨티나 경험은 다른 국가에서 나타날 수

12) 아르헨티나에서 군사정부 시절 50명 정도의 유아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부모로부터 탈취되었다고 한다.

13) Marcela Valente, Argentina: Belated Reparations for Victims of the Dictatorship, World News, <http://www.oneworld.org/ips2/feb/argentina.html>

있는 위험의 경고이기도 했다.

- 결론적으로 아르헨티나 경험은 화해를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의문사 사건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이라는 정의실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 3. 칠레의 사례

#### 1) 피노체트 정부 하에서의 인권침해 정도

-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정부(1973-1990) 17년 동안 3천 5백 명이 희생되었고 10만 여명이 고문으로 불구가 되었다. 또한 20여만 명이 국외로 강제 추방되었다. 칠레 군사정부 하에서의 희생자들에는 칠레인 뿐만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등 일부의 외국인들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노체트는 1998년 10월 16일 영국에서 인권유린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칠레는 물론 국제적으로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 피노체트 정부 하에서의 인권침해는 크게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시기는 집권초기인 1973년 9월 11일에서 1974년 6월까지이다. 이때 군부는 쿠데타 당일부터 인민연합 사냥이라고 할 정도로 좌익의 대량체포에 나섰다. 9월 11일 쿠데타 발발 이후 불과 며칠 사이에 체포, 투옥된 사람들의 숫자가 군사정권의 공식 발표로 6천명이었으나, 당시 인권조사를 위해 칠레에 있었던 각국 단체의 보고서에는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군부는 체포된 사람들을 국립스타디움 등 전국 75개소에 설치된 강제수용소로 보냈다. 그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고문과 학살 등으로 사망했다.<sup>14)</sup>

- 둘째 시기는 1974년 6월부터 1977년 8월까지이다. 이 시기 군부의 탄압대상은 혁명좌파운동(MIR)을 비롯한 반 정부 조직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 대통령 직속기구로 군 정보기관이 통합된 국가정보국(DINA)가 창설되었다.

14) 김기정, 칠레의 민주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1996.

- 셋째 시기는 1977년 8월에서 1983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인권탄압이 완화되었다. DINA가 해체되고 국가중앙정보부(CNI)가 창설되었다. 1980년 헌법이 통과되어 피노체트 정권이 어느정도의 정통성을 확보했다.
- 넷째 시기는 1983년에서 1990년까지이다. 1986년 피노체트에 대한 암살기도로 일시적으로 탄압이 고조되었다. 1988년 국민투표를 앞두고 억압정책이 크게 완화되었다.<sup>15)</sup>

## 2) 정부의 인권침해 가해자 사면

- 법률 제 2191호(1978년 3월 19일) : 자기사면법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사면이 행해졌다. 군사평의회(junta)는 미래에 군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1973년부터 1978년 기간동안 군부가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면하는 법률을 공포했다. 따라서 인권탄압이 가장 심했던 이 기간동안의 사례는 오늘날에도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
- 1988년 집권연장 신임투표에서 패배한 후 1990년 3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피노체트는 퇴임직전 1973-79년 계엄통치 기간 중 학살, 고문 등을 자행한 군인들에 대해 사면령을 내렸다.
- 피노체트는 퇴임사에서 “군인에 대한 외부 재판은 있을 수 없으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 1990년 3월 집권한 아윌린(Patricio Aylwin) 대통령은 1979년의 사면법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더욱이 철레 대법원이 이 사면법의 효력을 단순히 형벌을 면제할

15) 곽재성, 인권의 시작으로 본 철레의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9집, 1998.

뿐만 아니라 조사의 권한까지 박탈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실종자의 행방을 법원이 조사하는 것까지 봉쇄시켰다.

□ 피노체트는 지난 1998년 3월 칠레의 종신 상원이 된 이후 형사상 위법행위로 인해 기소되지 않는 면책 특권 지위를 누려왔다. 이로 인해 피노체트는 그의 집권기 동안 발생한 의문사 사건과 관련 그동안 제기된 61건의 소송에 대해 조사를 받지 않았다.

□ 칠레에서 민간정부가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점은 미약한 정부의 의지 문제도 있지만 1978년의 사면법과 군부가 마련해 놓은 안전장치가 여전히 존재하다는 점이다. 특히 피노체트는 퇴임직전 개헌을 통해 사면령을 내리고 대통령 권한 축소, 군부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들을 제정했다.

□ 1998년까지 자신이 육군총사령관직을 보유하도록 하고, 47명의 상원의원 중 9명을 피노체트가 직접 임명하도록 명문화한 1980년 신헌법을 개폐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피노체트는 퇴임 이후에도 칠레군의 대부로 남아 6만 육군을 사병처럼 거느리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일례로 1993년 5월 피노체트의 아들의 부패가 문제되자 대통령궁 맞은편 군사령부에 중무장한 군 병력을 집결시켜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3) 보상기구

□ 레틱보고서<sup>16)</sup>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권리회복 차원에서,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책임을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사망 또는 실종자의 가족에게 물질적, 도덕적 보상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레틱보고서에서 제안한 보상을 위한 권고사항

16) 총 1천 7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보고서는 위원장인 라울 레틱(Raúl Rettig)의 이름을 따서 레틱보고서라고 불리기도 한다.

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희생자들의 존엄(dignity)에 대한 공적 보상이다. 국가는 공적으로 희생자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고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희생자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추모공원 건립, 국가인권일 제정, 화해를 위한 이벤트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 둘째, 국가의 책임에 의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혜택을 받는 주어진 시간적 제약의 확대, 생활비용의 증대에 맞게 지원재조정, 단일보상연금 제안 발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셋째, 건강에 관한 것으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건강부(Ministry of Health)에서 마련된 자금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들을 치료해주어야 한다.
- 넷째, 국가보조기금을 마련한다. 정부는 희생자들을 소재를 파악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생활비와 교육비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다섯째, 이들 조사과정에서 불법적인 매장과 재판에 관한 정보의 은폐를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실종자들의 매장장소를 파악하는 것은 칠레사회의 화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매장 관련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 반대로 매장 장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보장하고 사법적 처벌을 면제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sup>17)</sup>

17) '국가위원회'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매장된 실종자들의 유해 발굴이었다. 칠레 곳곳에서 발견된 대규모 묘지 발굴은 군사정부하의 인권침해를 생생하게 증명했다. 특히 칠레 북부 피사구

□ 이와 더불어 레틱보고서는 인권침해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종자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설치를 주장했다.<sup>18)</sup>

□ 위원회의 보고서 제출과 더불어 의회는 일련의 법률을 제정하여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가능하게 했다.

- 법률 제19,123호(1992년 2월 8일) : 그 법은 국가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보상과 화합을 위한 국가법인(National Corporation for Reparation and Reconciliation)을 창설하고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제공과 인권에 대한 존중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2년간 내무부 산하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했다. Corporation의 핵심적 목적은 1) 위원회가 해결하지 못한 600 사례 이상을 조사하는 것, 2)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와 Corporation에 의해 일치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관리하는 것 이었다.<sup>19)</sup>

□ Corporation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희생자의 명단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1차로 했다. 이 보고서에 있는 명단은 대상자로 입증된 것으로 했다. 따라서 corporation의 보상활동은 ‘위원회’ 활동과의 연계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문피해자는 보상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유일한 지원은 사회보험서비스, 정신적 상담, 의료치료 등의 국가치료프로그램의 무료 이용이었다. 어떠한 고문피해자는 잔혹한 고문으로 인해 심신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도 있었다. 그러

---

아(Pisagua)에서의 유해 발굴은 충격적이었다. 그 지방은 건조한 기후는 희생자들의 시신이 썩지 않고 미아라로 남아있게 했는데, 그들 희생자들의 일그러진 얼굴상은 희생 당시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8)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ort(Rettig Report)

<http://www.derechoschile.com/basicos/ddhhchile/rettig/english/rettigengindex1.html>

19) Edelstein, Jayni(1994), Rights, Reparations and Reconciliation: Some comparative notes, Seminar No. 6. <http://www.wits.ac.za/csvr/papers/papedel.htm>

나 그가 죽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

#### 4) 보상정책의 집행내용

##### (1) 진상규명

- 아월린 정부는 군정 하에서 실종되거나 학살당한 희생자 2천여 명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특별검사의 임명과 전권을 수여하는 '아월린법안'을 제출했으나 군부의 완강한 반대와 인권조직들의 미온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 아월린 정부의 과거청산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진행되었지만 일정정도의 인권문제 해결은 있었다. 아월린 집권초기에 구속자와 실종자 명단이 발표되었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탑이 건립되었으며 국영TV를 통해 군사정권의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 특히 아월린 정부는 1990년 5월 행정명령에 의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Verdad y Reconciliación)를 구성했다. 국가위원회의 목적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데 것이었고, 주 임무는 '공정한 배상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적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었다. 1990년과 1991년 2년에 걸친 국가위원회 활동은 1973년 9월부터 1990년 3월까지 피노체트 정부 하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
- 위원회 조사결과를 정리한 레틱(Rettig)보고서는 인권탄압의 원인분석, 개별 사례들을 기술하면서 정보기관, 군, 사법부의 행태를 파헤쳤다. 레틱 보고서에 의하면 총 2,279명이 인권침해 희생자로 사망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16-30세 사이였고, 46%가 신원불명이었다고 한다. 또한 보고서는 군사정부 하에서 비밀 경찰이 자행한 꼼꼼한

고문, 강간, 살해, 시체유기 수법을 상세히 기록했다. 비밀경찰은 물고문, 전기고문, 가족 앞에서의 강간, 동물을 이용한 고문 등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고문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고문 받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떠오르지 않도록 배를 갈라 바다에 수장했던 것으로 기록했다.

## (2) 정의실현

- 1989년 선거과정에서 아월린 후보는 인권문제에서 진실규명과 정의실현과 피해자 보상의 원칙에 따른 강력한 해결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정의의 원칙과 모순되는 화합의 개념이 곧 공론화 되었고, 진실규명과 보상문제가 관련자들간의 협상으로 해결될 조짐이 보이면서 이 공약은 곧 애매해졌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아월린 정부의 과거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겨진 것은 미약했다.
- 아월린 정부는 피노체트 정부 하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한 규명작업,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 등 3개 주요 목표 달성을 실패했다. 아월린 정부는 이 보고서가 권고한 인권침해 사범들을 기소하거나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월린 정부는 정의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강조했다. 아월린 정부는 ‘진상규명’을 인권문제의 중요한 해결로 보고 정의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민주화 시기 처음 5년 동안 단 한명의 고위장교도 기소되지 않았다.
- 아월린에 이어 1994년 칠레 대통령에 취임한 에두아르도 프레이(Eduardo Frei)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프레이 대통령은 ‘진실은 밝히되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보고서조차 희생자의 이름만 기록하고 가해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을 정도로 과거 군정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나 처벌은 하지 못했다.

□ 1994년 집권한 프레이 정부하에서 대법원은 1995년 5월 30일 피노체트 정부하에서 정보기관 DINA의 책임자였던 콘트레라스(Manuel Contreras)와 DINA2인자였던 에스피노사(Pedro Espinoza) 장군을 레텔리타(Orlando Letelier) 사건<sup>20)</sup>의 관련자로 처벌했다. 그러나 에스피노자가 즉시 처벌된 반면에 비중이 커던 끈떼레라스가 10월 말 투옥된 것에서 알수 있듯이 그 이면에는 군인에 대한 임금인상과 계류중인 600여 건의 다른 소송 취하라는 거래하에 군부가 이들의 처벌을 수용했다는 점이 있다.

### (3) 경제적 보상(economic compensation)

□ 경제적 보상에는 월 연금제공, 의료서비스지원, 교육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1992년 1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 19,123호는 다음과 같은 보상조치를 규정했다.

#### □ 연금제공

- 국가위원회와 Corporation에 의해 인정된 의문사 유가족들에 매달 연금을 제공하기로 한다. 보상연금의 유자격자는 인권침해 또는 정치적 침해의 희생자들이 될 것이다. 연금혜택은 생존 배우자(40%), 희생자의 어머니(또는 어머니가 사망했으면 아버지)(30%), 희생자 사생아의 어머니(또는 희생자가 어머니이면 아버지)(15%), 25살 미만의 아이들 또는 나이와 관계없이 무능력(disabled, 불구)(15%) 아이들 등에 배분된다.

- 연금 혜택은 12달 분량의 자금이 1년에 한번 지급되기도 했다. 해당 지급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25살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희생자의 자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가족에게는 평생 연금이 지급되게 되었다.<sup>21)</sup>

20) 올란도 레텔리나는 아옌데 정부하에서 외무장관을 역임했던 인물로 피노체트 집권후 위성턴에서 반피노체트운동을 주도하다가 칠레 정보국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폭탄테러로 사망했다.

## □ 의료서비스 지원

-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희생자의 부모, 형제, 자매 등 유가족들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권리 제공받는다. 그 수혜 대상자는 위원회와 Corporation에 의해 판정된 실종자, 사망자의 가족 구성원이었다. 의료비 지원에 사용된 총 비용은 년 95만 폐소였다.
- 다른 비 현금 의료지원들을 보면 살해자 또는 실종자 관련자 그리고 정치범과 관련해 개설된 국립의료시설의 특별 상담과 의료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되었다.
- 건강부는 '보상과 완전치료프로그램'(Programme of Reparation and Integral Health Care)을 구축하여 인권침해에 의해 부상당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의료, 사회복지, 정신과 치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희생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들도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을 부여 받았다.<sup>22)</sup>

## □ 교육서비스 지원

- 교육서비스 지원으로 희생자 자녀들이 35살 될 때까지 교육지원금과 생활비를 제공받는다. 법에 따라 중학교, 대학교, 전문연구원(professional institution)과 기술연구원(technical institution) 등에서 공부하는 희생자 자녀들은 등록금과 학비, 그리고 매월 생활비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 받게 되었다.

21) Edelstein, Jayni(1994), Rights, Reparations and Reconciliation: Some comparative notes, Seminar No. 6. <http://www.wits.ac.za/csvr/papers/papedel.htm>

22) Edelstein, Jayni(1994), Rights, Reparations and Reconciliation: Some comparative notes, Seminar No. 6. <http://www.wits.ac.za/csvr/papers/papedel.htm>